

漁業勞動生產性과 適正賃金

朱 尤 一

責任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南 秀 錡

研究員, 水產開發研究室

I. 序 言

II. 賃金決定의 一般理論

III. 漁業賃金 決定要因과 適正賃金

IV. 結 言

I. 序 言

漁業勞動은 일반적으로 他業種의 勞動보다 勞動條件이 劣悪하고 單位當 勞動強度도 높다고 할 수 있다. 漁業은 그 生產場所가 「水界」라는 特수한 環境 속에서 행하여지는 勞動이므로 자연히 外部의 不可抗力의 危險에 노출되기 쉽고, 또 魚群이라는 流動性 資源을 추적, 捕獲하는 作業이므로 作業過程上 불규칙적이고 斷續的인 勞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勞動의 繁閑의 差가 심하고 生產過程上 波狀의인 集中勞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漁業賃金은 단순한 勞動用役에 대한 代價로서 파악될 것이 아니라, 再生產力 구축을 위한 生活基盤造成, 더 나아가 이러한 惡條件下에서의 勞動에 대한 機會費用까지 補償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漁業賃金은 제한된 漁期에 따른 不規則의 인雇傭, 漁獲量에 따른 經營成果의 일방적인 分配 등으로 실지조업에 종사하는 下級船員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小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¹

따라서, 漁業賃金이 他產業賃金과 비교할 때 그 勞動生產性을 보전해 줄 만한 충분한 임금수준에 도달해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 또 勞動生產性을 제약하는 諸般要因에 대한 분석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論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勞動市場의 見地에서 漁業生產勞動力의 減少를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水產業의 상대적인 위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勞動力의 移動이 賃金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完全競爭市場이 존재한다면 賃金水準에 따른 勞動力의 需給을 생각할 수 있으나 實際상으로는 地域上 隔離, 勞動의 質과 特性, 市場進入의 障碍 등으로 完全競爭市場은 존재할 수 없기에 賃金이 높다고 해서 勞動力이 모두 그 쪽으로 이동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반적인 漁業賃金의 劣勢는 점진적으로 勞動力 移動을 수행케 하여 漁業의 國民經濟上 상대적 위치를 저락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全般的 業種別 漁業賃金水準을 勞動生產性과 관련시켜 파악해 보고, 實제 漁業賃金 決定時 諸般 制約要因과 그 影響을 고려한 適正賃金 水準 여부를 논의해 보도록 한다.

II. 賃金決定의 一般理論

漁業賃金決定의 구체적 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一般產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勞動의 限界生產力說을 중심으로 한 賃金決定의 一般理論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實際活用指標인 附加價值 生產性을 중심으로 漁業賃金水準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限界生產力說과 賃金

勞賃과 勞動生產性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限界理論을 均衡과 分配의 기초로 삼고 있는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은 賃金은 勞動의 限界價值生產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한 企業水準에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떤 기업의 生產函數가 (1)式과 같이 정의된다고 하고, 資本(K)과 勞動(L)의 單位當價格을 각각 r , w 라 하자. 그러면 기업의 利潤(π)은 總收入(TR)에서 總費用(TC)을 뺀 것과 같고, 最終生產物 X 의 시장가격을 P 라 하면 (2)式이 성립한다.

$$(1) X=f(K, L)$$

$$(2) \pi=TR-TC=P\cdot f(K, L)-(rK+wL)$$

여기서 기업의 利潤(π)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式을 K 와 L 에 대해 각각 微分하여 그 값이 零이 되게 하면 그때의 r 과 w 의 값이 最適 K

와 L 의 購入量이 된다. 이 式을 각각 (3), (4)라 하자.

$$(3) \frac{\partial\pi}{\partial K}=P\cdot MPP_K-r=0 \\ r=P\cdot MPP_K=VMP_K$$

$$(4) \frac{\partial\pi}{\partial L}=P\cdot MPP_L-w=0 \\ w=P\cdot MPP_L=VMP_L$$

여기서 MPP_K 는 限界資本生產物, VMP_K 는 限界資本生產物의 價值, MPP_L 은 限界勞動生產物, VMP_L 은 限界勞動生產物의 價值를 말하며, (4)式이 의미하는 것은 賃金과 勞動의 限界生產物의 價值가 일치할 때 기업의 利潤이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理論上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能力은 $w=VMP_L$ 의 水準이며 이를 초과해서는 지불될 수 없다. 그렇다고 勞動者는 꼭 $w=VMP_L$ 의 水準까지 賃金支給을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理論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完全競爭市場의 存在에 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實際로 要素間의 代替의 互換性 등으로 $w < VMP_L$ 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다. 또 설혹 完全競爭市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VMP_L 은 現실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개념이며, 過剩勞動力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產業에서는 그 勞動의 限界生產은 零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의 實際的 賃金決定指標로서의 利用은 限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賃金水準과 勞動의 限界生產性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보다 現실적으로 利用可能한 統計資料로서 勞動의 平均生產性을 利用, 分析하는 것도 妥當性 있는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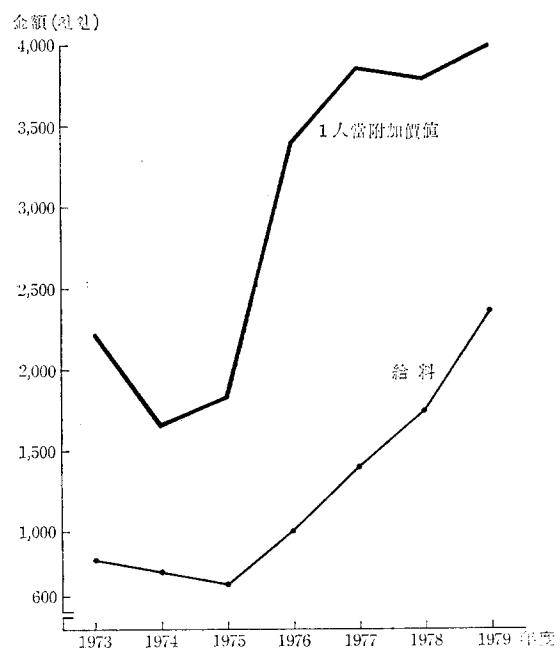
2. 附加價值生產性과 實質賃金

賃金과 勞動生產性의 關係에 있어 現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實質賃金을 勞動의 平均生產性과 관계시키는 일이다. 平均生產性이란 物的 生產性이 아닌 價值生產性을 의미하며 이는 生產額(在庫를 무시하면 賣出額)을 從業員數로 나눈 값이다. 이에는 일반적으로 附加價值 生產性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理由는 이 指標가 企業의 採算性을 잘 반영해 주며 요즘 企業이 高賃金, 高能率, 高利潤을 실현하기 위하여 從來의 名目的 收益인 賣出額 中心 經營에서 실질적인 收益이라 할 수 있는 附加價值 中心 經營으로 質的 轉換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漁業에 있어 附加價值生產性을 實質賃金 水準과 관계시켜 고찰해 보기로 하자. 他企業이 산출한 生產物에 勞動과 資本을 투입하여 生產된 製品의 종식된 가치를 附加價值라 하는바, 漁業經營活動에 있어 附加價值는 販賣手數料, 船員賃金, 租稅公課, 減價償却費, 支給利子, 經營體純利益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附加價值는 企業의 採算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附加價值 生產性은 賃金水準을 장기적으로 규정하하는 좋은 指標가 될 수 있다.

〈圖1〉은 水產業 1人當 年間 附加價值와 賃金水準間의 相關關係를 長期에 걸쳐 관찰하여 본 것으로 이를 보면 兩者는 거의 나란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生產性과 賃金의 관계에서 附加價值의 크기에 따라 賃金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圖1〉의 資料로서 1973~79년간의 附加價值와 賃金과의 관계를 順位相關係數²로 파악해 보면 $r=0.93$ 이라는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낸다. 이는 비록 水產業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全產業에 공통

圖 1 水產業의 年間 1人當 附加價值와 供給額 推移



된 현상으로 각 年度別로 몇 개 對象業體를 선정, 위 兩者間의 順位相關係數를 계산해 보아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³

이와 같은 附加價值 生產性과 賃金간의 相關關係를 기초로, 水產業에 있어서의 附加價值 生產性을 他產業과 비교해 보고 그에 따른 賃金水準의 適正 여부를 검토해 보자. 韓國銀行刊「企業經營分析」에 나타난 生產性關聯指標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것이 〈表1〉이며, 여기서 水產業은 遠洋漁業, 沿近海漁業, 甲殼類 및 軟體動物採取業, 水產動物捕獲業 및 其他 漁業으로 漁業總體의概念이다.

〈表1〉을 보면 1979年 水產業의 附加價值生產性은 3,990千 원으로 產業全體의 中位 정도로 보아지며 賃金水準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電氣業은 21,157千 원, 不動產 및 企業用役務은 3,085千 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電氣業의 경우 韓國電力 1개 社를 대상으

表 1 1979年度 勞動生產性 關聯指標

	賃金水準 (千원)	附加價值生産性 (千원)	勞動裝備率 (千원)	設備投資効率 (%)	資本集約度 (千원)	總資本投資効率 (%)	勞動分配率 (%)
水 產 業	2,363.0	3,990.4	6,710.0	59.5	13,588.9	29.4	59.2
鐵 製 造 業	2,423.1	3,050.0	2,568.0	118.8	6,357.6	48.0	79.4
電 氣 業	1,776.6	3,529.1	4,033.2	87.5	11,326.2	31.2	50.3
建 設 業	4,471.4	21,257.2	61,369.5	34.6	116,363.0	18.3	21.0
都 小 賣 · 宿 泊 業	3,099.4	4,602.3	1,387.7	331.7	7,547.0	61.0	67.3
運 輸 · 倉 庫 業	1,977.6	3,578.5	2,767.9	129.3	12,385.6	28.9	55.3
不動產 및 企業用役業	1,619.5	2,853.3	4,229.8	67.5	6,714.4	42.5	56.8
서 어 비 스 業	3,085.2	7,524.1	21,522.1	35.0	39,102.4	19.2	41.0
	1,535. *	2,545.5	1,605.2	158.6	4,964.4	51.3	60.3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80。

表 2 年度別 業種別 漁獲量 構成比

단위 : %

	遠洋	捕鯨	底引網	旋網	敷網	刺網	一本釣	延繩	採具藻	定置網	淺海養殖	内水面	其 他	
1972	16.7	0.2	18.0	5.9	10.2	12.2	4.2	4.1	1.9	7.7	2.4	12.0	0.1	4.9
73	21.4	0.2	15.9	4.8	9.7	8.5	4.1	2.7	2.1	6.4	2.6	15.5	0.1	6.5
74	20.7	0.2	15.2	4.4	11.5	9.4	4.2	2.1	2.1	6.0	3.7	16.8	0.1	4.2
75	26.5	0.1	15.5	3.8	10.5	7.5	4.9	2.3	1.2	6.2	2.6	16.5	0.4	2.5
76	30.1	0.1	13.4	5.4	9.1	5.7	3.0	2.1	0.7	5.1	2.2	17.1	0.6	5.7
77	24.7	0.1	14.5	7.1	8.8	5.6	3.4	0.8	1.3	5.4	2.3	20.3	1.1	5.2
78	24.2	0.2	15.8	7.8	10.0	5.3	5.0	0.9	0.6	4.8	3.2	16.7	1.4	4.7
79	20.1	0.1	14.8	8.0	11.2	4.1	5.7	1.2	0.7	4.0	4.1	19.8	1.7	4.5

資料：農水產部，「水產統計年報」，各年度에서 作成。

로 하였고, 不動產 및 企業用役業은 不動產의 賃貸仲介와 工學, 建築, 會計監查와 같은 技術用役業이기 때문이다. 水產業은 이 두 業種을 제외하면 나머지 產業 중 附加價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賃金水準도前述한 바와 같이 附加價值生產性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산업 전체의 中位水準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는 水產業에 있어서 附加價值生產性이나 賃金水準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더 세분하여 業種別 規模別로 살펴보면 좀 다른側面을 볼 수 있다. 물론 他產業에도 企業規模의 大小, 技術蓄積의 水準 등에 따라同一 產業 안에서도 附加價值나 賃金의 隔差가 생길 수 있지만 水產業의 경우 業種別·規模別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몇

몇 業種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漁業이 自家勞動을 중심으로 한 零細漁家漁業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標本抽出의 偏重 현상을 고려하면 전체적 平均值를 가지고 水產業 全般의 附加價值生產性이나 賃金水準을 일률적으로 中位水準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表2>는 최근 몇 년간의 業種別 漁獲量을, 當該年度의 總漁獲高를 100으로 했을 때의 構成比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보면 1979年の 경우 遠洋, 低引網, 敷網, 淺海養殖 등 4개 業種이 總漁獲高의 65.9%를 차지하였고, 그 전의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附加價值의 算定에 있어 물론 魚價도 중요한 要因이 되겠지만 平均的 意味로서 보면 거의 漁獲量에 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漁獲量이 큰 上記業種이 거의 水產業 全體의 附加價值를 구성할 것이며, 나머지는

表 3 1979年度 產業別 月平均賃金對比

產業別	全產業 ¹⁾	鑄工業	製造業	電氣業	建設業	都小賣宿泊業
月平均賃金	206,955	201,925	148,050	372,616	258,283	164,800
遠洋漁業과의 對比(%)	129	126	92	232	161	103
定置網漁業 //	442	431	316	796	552	352
水產廳長許可漁業 //	228	222	163	410	284	181
沿岸漁業 //	539	525	385	970	672	429

產業別	運輸倉庫業	不動產 및 企業用役業	서어비스業	遠洋漁業 ²⁾	沿近海漁業		
					定置網漁業	水產廳長 許可漁業	沿岸漁業
月平均賃金	134,958	527,100	127,950	160,330	46,832	90,851	38,427
遠洋漁業과의 對比(%)	84	110	80	100	29	57	24
定置網漁業 //	288	549	273	342	100	194	82
水產廳長許可漁業 //	149	283	141	176	52	100	42
沿岸漁業 //	351	669	333	417	122	236	100

1) 各產業平均賃金을 算術平均하였음.

2) 1980年 上半期 資料를 消費者 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資料: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80.

水產業全體水準에 미달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表3>은 水產業을 業種別로 분리하여 遠洋漁業, 定置網漁業, 水產廳長 許可漁業, 沿岸漁業 등의 1979년도 月平均賃金을 他產業 平均賃金과 대비해 본 것으로 이를 보면 遠洋漁業의 경우는 月平均賃金 160,330원으로 製造業, 都小賣・宿泊業, 서어비스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產業平均 206,955원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으나 沿近海漁業의 대부분은 他產業 賃金水準의 절반도 안 되며 특히 定置網漁業, 沿岸漁業은 46,832원, 38,427원으로 全產業 平均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漁業勞動生產性과 賃金에 있어서 문제점은 沿近海漁業에서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漁業勞動生產性과 賃金問題를 沿近海漁業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表4>는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調查・集計한 1979년도 연근해어업 労動生產性 關聯指標로서 允許漁業으로 개량식 대모망, 소대망을 다루었고 水產廳長 許可漁業은 國내 연근해어업 중

기업성이 있는 業體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道知事 許可漁業은 沿岸漁業으로 10톤 미만의 小型漁船漁業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標本選定한 것이다.

이를 우선 <表1>의 全產業 水準과 비교해 보면 附加價值生產性의 경우 2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동해구 트롤, 근해 포경, 80톤 이상 근해 안강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業種이 附加價值最低業種인 서어비스業의 2,545千 원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금수준도 上記業種을 제외하면 서어비스業 賃金水準인 1,535千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勞動裝備率은 비교적 他產業에 비하여 높으나 定置網漁業, 沿岸漁業은 漁業이 固定設備가 많아 드는 產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他產業水準에도 못 미치는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음에는 業種別로 附加價值와 그 關聯指標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表4>에서 보면 비교적 施設規模가 큰 大型機船低引網, 大型旋網, 동해구 트롤, 80톤급 이상 근해 안강망, 근해 포경 등은 附加價值生產性이 평균 3,500~4,500千 원 사

表 4 1979년도 沿近海漁業勞動生產性 關聯指標

단위: 원

區 分	從業員 1人當附加價值	從業員 1人當人件費	勞動裝備率	資本集約度	總資本投資效率(%)	勞動所得分配率(%)
개 랑 식 대 모 망	1,647,463	638,203	1,103,737	1,575,632	104.6	38.7
소 대 망	1,677,189	485,773	1,004,091	1,433,636	116.9	29.0
2 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3,365,456	1,894,670	5,749,692	6,501,462	51.8	56.3
1 수인 대형기선 저인망	2,082,918	1,446,096	3,497,917	4,046,083	51.5	69.4
동 해 구 기 선 저 인 망	1,154,580	1,100,610	2,803,000	3,012,462	38.3	95.4
서 남 구 기 선 저 인 망	2,285,244	1,035,454	2,073,077	2,311,538	98.9	45.3
동 해 구 트 를	4,624,961	1,948,397	3,783,900	4,363,100	106.0	42.1
근 해 포 경	3,580,737	1,461,128	6,018,800	7,259,300	49.3	40.8
대 형 선 망	2,268,686	1,481,479	6,284,674	7,014,737	32.3	65.3
근 해 통 발	1,110,408	721,252	1,616,200	1,812,100	61.3	64.9
안 강 망(평균)	2,094,941	1,487,202	6,450,444	7,545,333	28.5	71.0
" (80톤이상)	3,797,860	2,198,040	8,479,700	9,659,000	39.3	57.9
기 타 근 해(동해안)	1,627,984	1,082,799	1,648,875	1,790,688	90.9	66.5
" (서해안)	1,845,490	709,219	2,464,222	2,821,111	65.4	38.3
수산청장 허가어업 평균	1,786,713	1,090,222	2,087,214	3,168,857	56.4	61.0
연 안 어 업	933,240	461,133	1,288,800	1,413,600	66.0	49.4

資料：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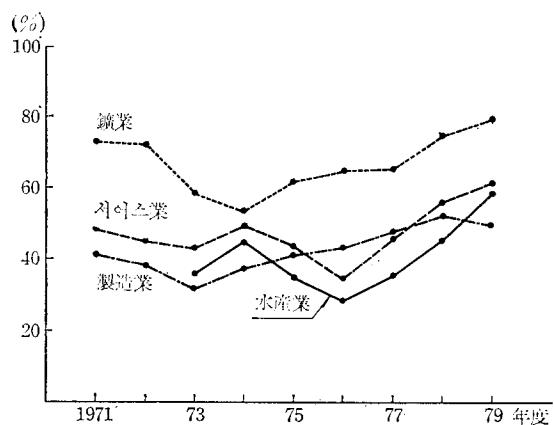
이로 째 높게 나타나나, 沿岸漁業 균해통발 등은 1,000千원 수준의 저조한 生產性에 머물러 있다. 이는 施設規模 즉 勞動裝備率의 정도가 附加價值 生產性의 向上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魚價나 資源에 關聯된 漁況에 큰 변화가 없는 한 附加價值生產에 거의 결정적인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漁業勞動者 固有의 勞動의 質은 거의 비슷하므로 勞動의 効率을 보다 중대시킬 수 있는 施設의 大型化・機械化가 가장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積세한 資本集約度나 勞動裝備率을 가지고 附加價值生產의 增大를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賃金의 上昇도 기대할 수 없다.

附加價值 生產性은 勞動裝備率과 設備投資効率의 積, 혹은 資本集約度와 總資本 投資効率의 積으로 표시할 수 있다.⁴ 따라서 經營의近代化指標인 資本集約度나 勞動裝備率의 문제도 附加價值生產에 중요하지만 資本豫算의 觀點에서 본投資의 經濟的 分析側面인 總資本 投資efficiency이나 設備投資efficiency도 중요하다. 이 指標는 新規 혹은增額投資 등 모든 投資安定時意思決定資料가 되

며, 이 指標의 効率이 높아지면 勞動生產性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개량식 대모망, 소대망, 동해구 트를, 잡수기어업 등은 100% 가 넘는 높은 投資efficiency를 보여주나, 大型機船底引網, 근해포경, 大型旋網 등은 50% 내외로 附加價值의 크기에 비해 그리 높은 投資efficiency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漁船, 漁具 등 固定資產에 대한 과다한 投資로 인한 資本回轉率 저하, 施設規模에 비례하는 施設維持費用, 그 業種固有의 漁況, 魚價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資本收益率을 고려한 적정시설 규모, 操業過程의 科學的運用으로 기존施設을 完全稼動시켜 設備投資efficiency 또는 資本投資efficiency의 增大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附加價值生產性을 높이고 賃金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勞動集約的 經營에서 資本集約的 經營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漁業經營體의 零細性의 이유가 漁業內部의 자체적 문제일 수도

圖 2 產業別 勞動所得 分配率 推移



있다는 점이다. 즉 生產經營體로서의 漁業은 漁獲과 魚價의 不安定性으로 매우 많은 危險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危險은 經營能力에 의하여 없앨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小規模 經營을 하게 되고 따라서 漁業構成 중 個人經營體의 數가 優位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賃金을 論議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이는 賃金水準 向上에 있어 附加價值의 向上도 중요하겠지만 이 향상된 附加價值의 成果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勞動分配率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資本家와 勞動者 사이의

利益分配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國民經濟 全體의 所得分配라는立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水產業의 경우 앞의 <表1>에서 勞動分配率이 59.2%로 鎳業, 建設業, 서비스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勞動條件, 作業上 危險度 등을 고려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鎳業과 같은 정도의 水準이 요구될 수도 있다.

勞動分配率의 또 하나의 有用性은 時系列上으로 이 業種의 分配率이 악화되고 있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資本家의 所得水準에 비해 勞動者의 所得水準이 실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圖2>는 韓國銀行刊「企業經營分析」에서 각 年度別로 產業別 勞動分配率의 推移를 관찰, 작성해 본 것으로 水產業의 경우 1975, 76년에 걸쳐 급격한 下落이 있었으며, 그후 계속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他產業에 비해 낮은 分配率을 보이고 있다. 50% 수준을 초과한 것은 1979년 한 해뿐이며 평균 40.7%의 비교적 낮은 분배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에는 실질적인 勞動分配率의 推移를 物價水準을 고려한 實質賃金 上昇率과 勞動生產性 上

表 5 水產業部門 賃金關聯指標

단위 : %

年 度	消費物價指數		名目賃金		實質賃金		勞動生產性	
	指 數	增 加 率	指 數	增 加 率	指 數	增 加 率	指 數	增 加 率
1973	64.2	3.2	122.4		190.7		188.3	
74	79.8	24.3	111.8	△8.6	140.1	△26.5	112.5	△40.3
75	100.0	25.3	100.0	△10.6	100.0	△28.6	100.0	△11.1
76	115.3	15.3	149.6	49.6	129.7	29.7	161.1	61.1
77	127.0	10.1	207.8	38.9	163.6	26.1	165.0	2.4
78	145.3	14.4	258.4	24.4	177.8	8.7	142.1	△13.9
79	171.9	18.3	349.9	35.4	203.5	14.5	126.2	△11.2
季 平 均		15.8		21.5		4.0		△2.2

註: 1975=100으로 한 不變價格으로 作成。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에서 作成。
經濟企劃院, 「經濟統計年報」, 各年度에서 作成。

昇率의 비교를 통해 관찰해 보기로 하자. 즉 劳動生產性의 上昇分 중에서 그 뜻이 劳動者에게 얼마나 배분되었는가를 實質賃金 上昇率을 통해 알아보려는 것이다.

<表5>를 보면 1973~79년간에 있어 年平均으로 消費者物價指數는 15.8% 名目賃金 上昇率은 21.5%, 實質賃金 上昇率은 4.0%, 劳動生產性 上昇率은 -2.2%로 되어 있다. 여기서 名目賃金 上昇率은 年平均 21.5%라는 높은 上昇率을 보였으나 급격한 消費者物價의 上昇으로 말미암아 實質賃金 上昇率은 4.0%에 그쳤다는 사실과 實質賃金 上昇率이 劳動生產性 上昇率 보다 6.2%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劳動生產性 上昇率과 實質賃金 上昇率의 비교는 기준연도의 分配狀態나 賃金水準이 적정한 수준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實質賃金 上昇率이 劳動生產性 上昇率을 초과한다는 것은 實質賃金의 劳動分配率이 점점 높아져 漁業經營成果의 뜻이 점점 漁業勞動者에게 많이 배분되게 된다는 뜻이 된다.

III. 漁業賃金 決定要因과

適正賃金

1. 生計費

賃金水準決定의 기준으로서 生計費, 즉 劳動의 再生產費로서의 意味는 중요하다. 漁業에 있어서도 勞動力保存과 장기적 漁業發展을 위해從事者の 최저생계비 유지 문제는 漁業賃金決定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漁業賃金은 漁業의 特수한 狀況에 기인하여 「깃가림」制란 特有의 賃金制度가 채택되고 있다. 이는 成果給에 해당하는 일종의 誘因制度로서

불확실한 漁獲水準, 不安定한 經營成果, 海上操業으로 인한 船主의 統制不可能 등의 이유로 漁業에 있어 불가피한 制度로서 인정되고 있다. 현재 賃金制度別 業種을 살펴 보면 固定給 實施業種이 정치망, 기선권현망 등이며, 「깃가림」制 實施業種이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기선유자망, 잡수기, 근해통발 등이며, 固定給併用「깃가림」制 實施業種이 대형선망, 근해포경, 동해구 트롤, 오징어一本釣 등이다. 이는 船主와 船員代表 사이의 個別協約이나 各業種別 組合과 海員勞組間의 團體協約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따라 勞使間 分配率·個別配分「깃」數·都中經費 등 세부적인 사항도 결정된다.

여기서는 標準生計費 指標로서 經濟企劃院 統計調查局의 「都市勤勞者生計費」資料를援用하여 생계비 수준 유지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資料는 우리나라 標準生計費 측정의 유일한 資料이며 漁業勤勞者 역시 都市勤勞者와 맞먹는 水準의 消費支出이 필요하므로 이를 漁業에 적용시켜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表6>을 보면 1979년 都市勤勞者 生計費가 月 168,433원이고 家口當 平均人口數가 4.76명, 家口當 就業者 數가 1.30명으로 집계되므로⁵ 年間 勤勞者 1인당 賃金은 1,554,858원을 하회해서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表4>를 살펴보면 2수인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 트롤, 80톤급 이상 근해안강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業種이 이水準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漁業이 最少限의 生計를 유지할 最低賃金水準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表4>에 나타난 賃金水準은 當該年度賃金의 單純平均值이므로 이를 職級別로 분해하면 下位職級 일수록 人員數가 많아지므로 實質的인 操業從

表 6 都市 勤労者 生計費推移

단위: 원(經濟價格), %

年 度		消費支出	食料品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 費
1975	金額	62,960	27,830	10,520	3,340	5,690	15,580
	構成比	100.0	44.2	16.7	5.3	9.0	24.8
1976	金額	78,860	33,900	13,890	3,760	7,330	19,980
	構成比	100.0	43.0	17.6	4.8	9.3	25.3
1977	金額	93,230	38,880	18,930	4,600	9,030	21,790
	構成比	100.0	41.7	20.3	4.9	9.7	23.4
1978	金額	124,050	49,520	26,810	6,120	12,610	28,990
	構成比	100.0	39.9	21.6	4.9	10.2	23.4
1979	金額	168,443	61,436	40,140	8,226	17,488	41,153
	構成比	100.0	36.5	23.8	4.9	10.4	24.4

資料：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에서 作成

表 7 짓가림제 實施業種의 船員分配比率에 따른 職業別 賃金水準

단위: 「짓」, 원

업 종	선원-선주 간 선원 분 배 비율	계	선원간 분배비율에 따른 일금							
			선장	기관장	감판장	조기장	일반선원	통신사	항해사	잡수부
2수인 대형기	45%	(34.5)	4,283,601 <i>3,569,668</i> (5.5)	3,569,668	2,141,800	2,141,800	1,427,867	713,933	2,141,800	
선 저인망			<i>(3×1)</i> <i>(2.5×1)</i>	(2.5×2)	(1.5×2)	(1.5×2)	(1×16)	(0.5×1)	(1.5×1)	
근해 안강망	35%	(10.5)	2,550,689 (2)	1,913,016 (1.5)	1,275,344 (1)	1,275,344 (1)	1,275,344 <i>(5)</i> <i>(1×5)</i>			
근해 통발	50%	(11)	983,525 (1.5)	983,525 (1.5)			655,683 <i>(8)</i> <i>(1×8)</i>			
잡 수 기	50%	(100%)	(15%)	(15%)	(13%)		(7%)			(50%)

資料：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事者의 賃金은 이것보다 더 하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짓가림제 실시업종의 선원분배비율을 중심으로 一般船員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表7〉은 선원간의 「짓」의 분배비율에 따라 〈表4〉의 平均賃金을比例的으로 분배하여 산출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일반선원의 경우 2수인 대형기 선저인망이 1,427,867원, 근해안강망 1,275,344원, 근해통발 655,683원 등으로 모두 최저생계비 유지수준을 밀돌고 있으며, 그나마 漁況이 나쁘면 더 밑으로 내려갈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船長과 機關長을除外한 감판장, 조기장, 통신사, 항해사 등 대부

분의 漁業從事者들이 거의 이 水準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 漁業賃金이 최소한의 再生産費마저도 保障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生活에 필요불가결한 費用支出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漁業所得外에 兼業所得이 필요하게 되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他產業에로의 勞動力移動이 생길 수 있다.

2. 企業의 支拂能力

賃金決定要因으로서 企業의 支拂能力도 고려되어야 한다. 生計費 保障문제는 근로자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企業側에서는 製造費用

表 8 1979年度 産業別 附加價值의 構成

内 容	法人稅 控除前 純利益	人件費	金融 費用	賃借料	租稅 公課	減價 償却 費
水 产 業	-16.1	59.2	16.0	2.1	4.4	34.4
鑛 葶 業	-4.0	79.4	5.6	0.6	1.3	17.1
製 造 業	11.3	50.3	19.2	1.4	2.0	15.8
電 氣 業	35.9	21.0	15.7	0.3	0.1	27.0
建 設 業	14.4	67.3	5.6	4.7	2.1	5.9
都小賣・宿泊業	14.1	55.3	19.3	2.9	2.4	6.1
運 輸・倉 庫 業	6.6	56.8	12.5	5.1	2.6	16.5
不 動 產 興 建 業	48.3	41.0	1.3	2.2	1.7	5.5
企 業 用 役 業	19.6	60.3	10.2	2.5	1.6	5.8
서 어 비 스 業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80。

에 속하는 人件費는 큰 支出項目의 하나이다. 아래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9년 附加價值 中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여 이는 企業의 支拂能力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水產業의 경우 法人稅 控除前 純利益이 -16.1%로 이는 經營成果上 損失을 의미한다. 鑛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逆으로 이야기하면 人件費 등의 費用의 과다한 지출이 純損失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현재의 賃金引上 못지 않게 繼續企業으로서의 企業成長문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企業의 支拂能力의 上限은前述한 바와 같이 勞動의 限界生產이나 이의 測定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附加價值 生產性全額을 支拂能力의 上限으로 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企業의 支拂能力決定은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운 概念이며, 이는 많은 變數의 영향과 그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겠다.

3. 適正賃金水準 決定

適正賃金水準의 範圍는 最低生計費 保障을 下限으로, 그리고 企業의 支拂能力을 上限으로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이 둘도 客觀的 基準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勞使間의 適正賃金의 크기는

서로간에 큰 差가 있게 마련이다. 또 企業環境은 항상 변화하게 마련이고 특히 水產業의 경우는 漁況에 따른 漁獲量의 變動, 魚價의 불규칙적인 脫落으로 더욱 보편적 一定率을 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適正賃金水準의 決定은 最低生計費 維持를 基本前提로 하여 企業의 全般的 財務構造와 企業成長의 側面을 고려하여 賃金上昇이 企業經營에 미치는 압박의 정도와 勤勞者에 미치는 士氣양양 및 生產性向上의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종합적인 經濟的 分析下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勤勞者의 生活安定, 노동의 定着性, 企業의 擴大再生產 등의 諸般問題를 企業單位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適正 賃金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IV. 結 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漁業賃金은 漁業이라는 特殊勞動에 대한 危險이 補償되리만큼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業種이 오히려 全產業平均을 하회하고 있으며 勞動生產格도 規模의 零細性, 生產의 純粹勞動依存的 性으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勞動生產性과 賃金과의 關係에서 가장根本的인 문제는 우선 附加價值를 크게 하도록 勞使가 합심하는 일이며, 그 다음에는 그 向上된 生產性의 成果를 공현도에 따라 公平히 分配하는 일이다. 附加價值의 增大를 위해서는 漁船・漁具・漁法에 있어 大型化・機械化가 이루어져 附加價值 構成要素인 勞動裝備率, 資本集約度를 높여야 하며 이의 效率적 運用을 위해 資本回轉率, 投資收益率을 提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設備投資効率, 總資本投資効率을 상승시켜야 한다.

勞動生產性 分配問題에 있어서는 勞動分配率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전반적 數值는 아직 全產業 平均水準 정도에 머물러 있다. 水產業이 他產業과 동일한 附加價值를 창출했을 때, 作業上의 危險 등을 고려한 機會費用을 감안 하면 漁業勞動者에게 더 많은 賃金이 주어져야 하나 사실 漁獲, 魚價 등 같이 統制不可能한 要素들에 의해 그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勞動分配率의 變動幅이 매우 커진다. 이것은 「깃가림」制한 必要惡的인 漁業特有의 賃金制度로 뒷받침 되며, 최근 불확실한 漁業勞動者所得을 安定화시키기 위해 固定給制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것도 最低生活水準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適正賃金水準은 勞動者의 最低生計費維持問題와 企業側의 支拂能力간의 調整문제로서 이는 한 가지 側面만을 강조할 수 없고 企業 자체의

目標, 成長可能性, 擴大再生產能力 여부, 財務構造上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봐야 하며, 勞動者側으로는 최저생계비수준 유지, 生産性向上, 士氣昂揚 등을 고려하여 이들 諸要素의 상호 유기적 작용과 그의 綜合的 analysis에서 企業單位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註 1.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漁業經營調查報告」, 1980, p. 74 參照.
2. 順位相關係數 : $e = 1 - \frac{6\sum d^2}{N(N^2-1)}$.
3. 裴茂基禱, 「生產性과 賃金과의 諸關係」, 勞動經濟論集, 1978. 9, p. 6 參照.
4. 附加價值生產性 = $\frac{\text{有形固定資產} - \text{建設假計定}}{\text{從業員數}} \times \frac{\text{附加價值}}{\text{有形固定資產} - \text{建設假計定}}$
 $= \text{勞動裝備率} \times \text{設備投資効率} \text{ 혹은 } \frac{\text{總資本}}{\text{附加價值}} \times \frac{\text{附加價值}}{\text{從業員數}} \times \frac{\text{總資本}}{\text{總資本}} = \text{資本集約度} \times \text{總資本投資効率}$
- 로 나타낼 수 있다.
5. 勞動廳, 「勞動統計年鑑」, “全都市 봉급자家口의 家口人員數別 家口當月平均收支”, 1980. 參照.